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관할세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지원센터에 따라 세관의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13.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을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그 밖”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사무관으로, 평택세관장 및”을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5조제7항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의 과단위 사무분장)”을 “(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3항을 분장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3항을 분장한다.

제34조제6항 중 “2명(6급 1명)”을 “3명(6급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평택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정한다)·서산시·홍성군·태안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 천안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 역·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은 제외한다)
--

별표 3 중 “천안세관”을 “평택세관”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98”을 각각 “4,812”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 “35”를 “34”로 하고, 식품위생 주사 “1”을 “2”로 하며, 관세주사보 “891”을 “893”으로 하고, 관세서기 “1,007”을 “1,010”으로 하며, 관세서기보 “768”을 “77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44”를 “149”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08”을 각각 “4,822”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 “35”를 “34”로 하고, 식품위생 주사 “1”을 “2”로 하며, 관세주사보 “912”를 “914”로 하고, 관세서기 “986”을 “989”로 하며, 관세서기보 “688”을 “69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44”를 “149”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관) ① 인천공항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u>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u>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u>행정사무관으로,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u>	제11조(세관) ① ----- 	

② ~ ⑭ (생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⑥ (생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 ----- ----- ----- <u>각 호 및 제17조의2 제3항</u> ----- -----.
⑧ ~ ⑱ (생략)	⑧ ~ ⑱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 . <u>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3항을 분장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 . <u>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u>

	과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3항을 분장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2명(6급 1명, 7급 1명)</u>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⑥ ----- ----- <u>3명(6급 2명)</u> ----- -----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798</u>	<u>4,812</u>	+14
일반직 계	<u>4,798</u>	<u>4,812</u>	+14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5</u>	<u>6</u>	+1
서기관	<u>35</u>	<u>34</u>	-1
·	·	·	
·	·	·	
식품위생주사	<u>1</u>	<u>2</u>	+1
·	·	·	
·	·	·	
관세주사보	<u>891</u>	<u>893</u>	+2
·	·	·	
·	·	·	
관세서기	<u>1,007</u>	<u>1,010</u>	+3
·	·	·	
·	·	·	
관세서기보	<u>768</u>	<u>771</u>	+3

·	·	·	
·	·	·	
전문경력관 다균(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44</u>	<u>149</u>	+5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08</u>	<u>4,822</u>	+14
일반직 계	<u>4,808</u>	<u>4,822</u>	+14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5</u>	<u>6</u>	+1
서기관	<u>35</u>	<u>34</u>	-1
·	·	·	
·	·	·	
식품위생주사	<u>1</u>	<u>2</u>	+1
·	·	·	
·	·	·	
관세주사보	<u>912</u>	<u>914</u>	+2
·	·	·	
·	·	·	
관세서기	<u>986</u>	<u>989</u>	+3
·	·	·	
·	·	·	
관세서기보	<u>688</u>	<u>691</u>	+3

·	·	·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44</u>	<u>149</u>	+5